
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

2013. 8.

※ 이 자료는 '13. 6.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“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”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를 돕고자 관련법령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.

목 차

I.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개요	1
1. 도입배경 및 제도 개요	1
II.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주요내용	1
1. 보증대상, 보증금액 및 보증면제	1
2. 적용시기	2
3. 보증수수료	2
4.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계약이행보증	3
5. 위반시 제재	3
III.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시행에 관한 FAQ ...	4
<참 고> 관련 법령	13

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

I.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개요

1. 도입 배경 및 제도 개요

-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해소를 위하여,
 - 원·하도급 건설업자가 공사수행을 위해 대여한 건설기계 대여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, 체불 등 보증금 지급 사유 발생시 보증기관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

II.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주요내용

1. 보증대상, 보증금액 및 보증면제

- (1) 보증대상 : 모든 건설공사
- (2) 보증금액 : 최대 4개월분을 한도로 실제 체불금을 지급
 - 계약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: 건설기계 대여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
 - 계약기간이 4월 초과하는 경우 : $\{(\text{건설기계대여금액}-\text{계약상 선급금})\div\text{공사기간(월)}\}\times 4$
- (3) 보증면제

-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·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그 뜻과 지급의 방법·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
-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(동일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)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
- 수급인이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

2. 적용시기

- '13. 6.19일 이후 최초로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을 체결한 건부터 적용

3. 보증수수료

-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*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(하도급)금액 산출 내역서에 명시

* 보증기관 손해율, 발주자 비용부담 등을 감안하여 별도 고시

<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>

(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331호, '13. 6.18)

- ▶ 전문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내역서 반영 기준
 - 보증서발급금액 : (재료비+직접노무비+산출경비)×요율
 - 적용요율 : A그룹(0.56%)~E그룹(0.11%)
- ▶ 하도급내역서 반영기준
 - 보증서발급금액 : 하도급공사비×요율
 - 적용요율 : A그룹(0.43%)~E그룹(0.09%)

4.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계약이행보증

- 건설업자의 기계보증에 대응하여 건설업자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음

5. 위반시 제재

-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아니한 경우
 -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,
 -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
- * 하위 법령(시행령 별표6)에서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하는 세부기준 마련

Ⅲ.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시행에 관한 FAQ

○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의 적용 시기는?

- '13. 6.19일부터 최초로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을 체결한 건부터 적용됩니다.

○ 모든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보증하여야 하는 지?

-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, 1건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, 수급인이 포괄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.

○ 1건 계약금액의 기준은?

- 건설현장별로 적용하되 건설기계별 구분없이 1건 계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(동일대여업자 분할계약시 합산)하면 반드시 지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.

- * (예시1) 동일 대여업자, 동일 현장, 다른 건설기계

- A업자로부터 B현장 투입 장비(굴삭기 200만원, 덤프트럭 200만원) 대여
⇒ 지급보증 대상 [∴ 동일 업자와 계약시 현장이 같으면 합산]

- * (예시2) 동일 대여업자, 동일 현장, 다른 건설기계

- A업자로부터 B현장 굴삭기 200만원 대여·지급후 다시 B현장 덤프트럭 200만원 대여
⇒ 지급보증 대상 [∴ 동일 업자와 분할계약시 합산]

- * (예시3) 동일 대여업자, 다른 현장, 다른 건설기계

- A업자로부터 B현장 굴삭기 200만원, C현장 덤프트럭 200만원 대여
⇒ 지급보증 면제 [∴ 동일 업자라도 현장이 다르면 비 합산]

○ 하루만 임대해도 20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보증을 해야 하는 지?

- 그렇습니다. 임대차 기간에 관계없이 1건 계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(동일대여업자 분할계약시 합산)하면 반드시 지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.

○ 보증금액을 최대 4개월분으로 정한 이유는?

- 보증금액은 계약기간 및 관행 등을 고려해서 건설기계 계약금액의 4개월분을 보증(계약기간 4개월 이하는 전액 보증)하도록 하였습니다.

* 하도급대금도 최대 4개월분 지급보증

○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금액을 200만원 이하로 정한 이유는?

-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체불빈도가 높은 건설기계(덤프 트럭)를 기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.

*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은 2백만원에서 1천만원 구간이 대부분임

○ 지급보증서는 언제 교부하여야 하나요?

- 보증서는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.

*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할 때 주도록 규정

○ 지급보증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?

- 보증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건설관련 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?

-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(법 제81조제4호)를 할 수 있고,
-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(법 제82조제1항제8호)할 수 있습니다.
-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은 건설업자가 선택이 가능
 - * 하위 법령(시행령 별표6)에서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하는 세부기준 마련
 - *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부과

○ 건설업자의 지급보증은 의무인데 반해 건설기계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은 임의사항인 이유는?

-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동일하게 임의조항(...요구 할 수 있다)으로 도입되었으나, 건설기계계약도 거래관계상 건설업자가 얼마든지 요구(건설기계 대여금의 10%)할 수 있습니다.
 - * 하도급 거래시 대부분 계약이행을 보증(하도급 계약금액의 10%)

○ 건설기계업자가 계약이행보증을 안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?

- 임의조항이어서 계약이행보증을 안하더라도 처벌이 없습니다.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.

○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계약이행보증을 안하면 지급보증은 면제 되나요?

- 그렇지 않습니다.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마찬가지로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계약이행보증과는 별개로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.

○ 1건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(VAT)가 포함되는 지?

- 1건 계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.

*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(공정위 표준약관 제10059호)상 사용금액(계약 금액)은 부가가치세 별도임

○ 건설현장별로 일괄보증이 가능한 지?

-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우 각 현장별로 가 보증 개념의 일괄보증 (동일 현장내 다수의 건설기계계약을 하나의 지급보증서로 교부)이 가능하도록 상품을 운용중이며, 일괄보증에 따른 계약업무도 조합이 자체 개발한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○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 여부?

- 건설공사의 도급(하도급)계약 당사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*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(하도급) 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.

*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331호('13. 6.18)

○ '13. 6.19일 이전에 발주된 공사는 보증서 발급 수수료가 공사 원가에 반영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?

- 법령에서 '13. 6.19일 이후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을 체결한 건부터 보증이 의무화되고 보증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 발주자가 설계변경 또는 계약금액의 조정*을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. (별첨 '질의회신' 참조)

*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(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),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(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)

○ 자기 소유의 건설기계를 쓰는 경우에도 보증을 하여야 하는 지?

-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은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임대계약시 대여금을 보증하는 것이므로 자기장비는 보증대상이 아닙니다.

○ 건설기계 대여시 지급각서 등으로 대금지급 보증을 명시하는 경우 보증서 발급 의무가 면제 되나요?

- 지급각서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한 대여료 지급결제 수단이 아니므로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* 건산법상 결제수단 : 현금(하도급법은 어음, 어음대체결제수단 등도 가능)

○ 기계임대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대계약을 하여 실제 임대금액과 기간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증하나요?

- 현장여건에 따라 실제임대 기간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대를

기준으로 실제 작업일수를 예상하여 가급적 실제 임대금액에 준하는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하고,

- 단기 일대계약으로 당초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로 예상되어 보증서를 미교부 하였으나 현장여건이 변동되어 200만원이 초과 되는 경우는 그 시점부터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.

○ 해외건설현장의 건설기계도 보증해야 하나요?

- 건설산업기본법은 국내법이므로 해외건설현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○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대상 건설기계는?

-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은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계약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금을 보증하는 것이며, 여기서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*를 말합니다.

* 건설기계 :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27개 기종

불도저,굴삭기,로더,지게차,스크레이퍼,덤프트럭,기중기,모터그레이더,롤러,노상안정기,콘크리트빔칭플랜트,콘크리트피니셔,콘크리트살포기,콘크리트믹서트럭,콘크리트펌프,아스팔트믹싱플랜트,아스팔트피니셔,아스팔트살포기,골재살포기,쇄석기,공기압축기,천공기,향타및향발기,사리채취기,준설선,특수건설기계(도로보수트럭,노면파쇄기,노면측정장비,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,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,수목이식기,터널용고소작업차),타워크레인

《국토교통부 질의회신》

○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제도가 무엇인가요?

- 국토교통부 전자민원(회신일 '13. 6.24)

-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,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며,
-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(하도급계약을 포함)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(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 포함)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,
-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.
- 공사기간중 1명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여러 종류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, 그 대여금액 합계가 2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이후 계약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대상이 됩니다.
- 제도시행(2013. 6.19) 전 도급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는 제도시행 후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변경을 통해 잔여공사비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합니다.
-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은 경우, 그 건설업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

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,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*할 수 있습니다.

* 하위 법령(시행령 별표6)에서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부과

《조달청 질의회신》

○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수수료 공사원가 반영 여부?

- 조달청 질의회신(규제개혁법무담당관-3847, '13. 7.10)

-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체결 후 관련법령의 제·개정으로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(각종 보험료 또는 법정수수료 등)이 발생한 경우에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6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바,
- 동 법 개정 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행중인 계약의 경우 동 보증서 발급을 위한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추가조정(보증서발급 금액)을 신청할 당시의 산출내역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.

《참고자료》

건설산업기본법령(발췌)

□ 건설산업기본법

제68조의3(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)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. 다만,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·건설업자·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수급인이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본다.

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(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)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(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)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.

④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(변경발급을 포함한다)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, 수급인(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한다),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과 보증관련 당사자 등의 이행사항 및 그 밖의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81조(시정명령 등)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4. 제22조제5항, 제34조, 제36조제1항, 제37조, 제38조제1항,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
5. ~ 10. (생략)

제82조(영업정지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1. ~ 7. (생략)

8. 제22조제5항, 제34조, 제36조제1항, 제37조, 제38조제1항,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
9. (생략)

② ~ ③ (생략)

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

제64조의3(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) ①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(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)에 기재된 재료비, 직접노무비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. 이 경우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.

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 제

68조의3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면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.

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

제34조의4(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)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·절차에 관하여 발주자·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
2.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(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)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

②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(변경발급을 포함한다)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, 수급인(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정한다),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

한다.

1. 발급연월일
2. 건설기계 대여 계약건명 및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
3.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
4. 보증채권자, 발급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)
5. 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(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)
6.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

③ 법 제68조의3제5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,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.

1. 계약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: 건설기계 대여금액에서 계약상선급금을 제외한 금액
2. 계약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 :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

$$\text{보증금액} = \frac{\text{건설기계대여금액} - \text{계약상선급금}}{\text{계약기간(월)}} \times 4$$

고 시 문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331호

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년 6월 18일

국토교통부장관

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

1. 적용기준

①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
(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포함)

- 보증서발급금액 : (재료비+ 직접노무비+ 산출경비) × 요율
- 적용요율
 - 토목공사(토목·건축공사 포함) : 0.41%
 - 건축공사 : 0.07%
 - 산업·환경설비공사 및 조경공사 : 0.13%

②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

- 보증서발급금액 : (재료비+ 직접노무비+ 산출경비) × 요율
- 적용요율

구 분		요 율
A그룹	1) 준설공사, 토공사,	2) 0.56%
B그룹	3) 시설물유지관리, 도장공사, 포장공사, 상·하수도설비공사,	4) 0.49%
C그룹	5) 비계·구조물해체공사, 보링·그라우팅공사, 수중공사, 가스시설시공 1종	6) 0.39%
D그룹	7) 석공사, 철근·콘크리트공사	0.28%
E그룹	8) A그룹 ~ D그룹 이외의 공사	0.11%

③ 하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

- 보증서발급금액 : 하도급공사비 × 요율
- 적용요율

구 분		요 율
A그룹	9) 준설공사, 토공사,	10) 0.43%
B그룹	11) 시설물유지관리, 도장공사, 포장공사, 상·하수도설비공사,	12) 0.4%
C그룹	13) 비계·구조물해체공사, 보링·그라우팅공사, 수중공사, 가스시설시공 1종	14) 0.31%
D그룹	15) 석공사, 철근·콘크리트공사	0.23%
E그룹	16) A그룹 ~ D그룹 이외의 공사	0.09%

- ※ 하도급내역서 작성시, 원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이 ①, ③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보증서 발급금액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, 해당 부족분은 원·하수급인이 부담하는 보증서 발급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며, 하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은 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족분을 제외한 금액만 반영한다.
- ※ 하도급자가 실제 부담한 건설기계보증 수수료가 하도급내역서에 반영된 수수료 보다 많은 경우, 추후 원도급자는 원도급내역서의 보증수수료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실제 보증수수료는 기준요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2. 재검토기한

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18일까지로 한다.

3. 행정사항

이 고시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